

(參 照)

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의안번호	227
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4. 3. 29

발 의 자 : 장창조의원외 8인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듣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구정에 대한 당면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보고 애로점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다수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구정전반에 대한 실과 소관 업무현황과 함께 현안사항, 주민불편사항, 집단민원 발생사항, 기타 시책 예산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당면 사항에 대하여 차회(제32회)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·답변을 함.

- 주요당면 의원관심 사항 -

〈 도시국 소관 〉

■ 지역교통과

지하철 관련 민원 발생 및 개통대비 구자체 추진대책

■ 도시개발과

낙동로 전력구공사 관련사항

토석채취 및 형질변경 사업장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

장림유수지 이설 사업 보상 및 지장물 철거대책에 관한 사항

■ 건 축 과

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집단 민원에 관한 사항

■ 건 설 과

재해대책에 관한 사항

각종 건설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■ 지 적 과

지적불부합지 민원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